

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76호
- 나. 발 의 자 : 이종환 의원(찬성자 33명)
- 다. 제안일자 : 2022년 8월 26일
- 라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2일

2. 제안이유

-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2에 따라 박물관이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 수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조례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박물관이 기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며 유상기증과 무상기증의 절차를 규정함(안 제4조).
- 나.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을 규정함(안 제8조의2 신설).
- 다. 수증심의위원회를 포함하여 박물관자료 수집과 관련된 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조항을 신설함(안 제8조의3 신설).
- 라. 수증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9조).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박물관자료의 기증여부를 심의·의결하는 수증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,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자료 수집의 공정성·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음.

나. 수증심의위원회의 신설(안 제4조제2항, 안 제8조의2, 안 제9조)

- 개정안은 관련 법령(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)에 따라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 수증여부를 수증심의위원회가 결정하고,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, 기능 및 심의·의결 절차에 관한 규정과 해당 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.
- 현행 조례에 따르면 자료 구입(제3조)과 자료 기증(제4조) 모두 자료 수집실무위원회,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,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3단계 절차를 거치되 그 최종 결정권은 박물관 운영위원회에 있음.
- 2016년에 개정된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증여부는 수증심의위원회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나 박물관은 조례에 따라 박물관 운영위원회가 박물관자료의 수증여부를 결정하고 있음.

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

제8조(재산의 기부 등)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- 따라서 수증여부를 결정할 수증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명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,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·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.
- 한편 「서울시 위원회 설치·운영 지침」은 법령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일 경우 기능상 유사·중복되는 위원회가 있더라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.

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」

제6조의2(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)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(이하 “수증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위촉한다.
- ③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된다.
-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증품(이하 “기증품”이라 한다)을 기증받을지 여부를 결정한 후 기증을 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증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해당 기증품을 반환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증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정한다.

- 또한 현행 조례상 수당 등 지급 대상은 실무위원회와 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에 한하고 있으나 신설되는 수증심의 위원회를 수당 등 지급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회의 참석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.

다. 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(안 제8조의3)

- 개정안은 박물관 내 각종 위원회 위원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임.
- 2011년에 제정·시행되고 있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1항은 위원의 결격사유,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음.

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7조(위원회의 설치절차 등)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.

1. 설치 목적·기능 및 성격
2. 위원의 구성 및 임기
3. 존속 기한(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)
4. 위원의 결격사유, 제척·기피·회피(시민의 권리·의무와 관련되는 인가·허가,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·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)
5. 회의의 소집 시기,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
6.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
7. 분과위원회,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설치방법,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- 또한 서울시 조직담당관이 작성한 「2022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 계획」(붙임1)은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으로써 제척·기피·회피 절차 적용을 강화하여 위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였음.

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규정은 박물관 내 각종 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결과의 객관성·공정성·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미 입법이 이루어졌어야 할 사항임.
- 따라서 동 조항의 신설은 시급하다고 판단되며, 향후 서울시는 이와 같은 입법불비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위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제·개정 등에 대하여 상시 검토하고 현행화하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.

문서번호	조직담당관-20611
결재일자	2022. 4. 7.
공개여부	부분공개(5)
방침번호	

주무관	분권참여팀장	조직담당관	정책기획관	기획조정실장
박진영	이은희	조성호	이동률	04/07 김의승
협 조	양성평등정책담당관 청년정책반장 정보공개정책과장			강지현 이성은 김속희



2022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

2022. 4.

서울특별시
(기획조정실)

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'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정책의 제형성	◆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? - 현황자료(통계자료 등)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위원회 전수조사 (1~2월)
	◆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- (시민참여) 청책토론회, 시민공모, 설문조사 등 - (전문가 자문) 자문위원회,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, 젠더자문관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정책수립	◆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(근거법령 및 규칙, 지침 등)는 검토하였습니까? - (선거법)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- (성별분리통계) 성별분리통계 생산·제시·분석 등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	◆ 정책(사업) 집행의 직·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? - (갈등)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- (사회적 약자)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- (일자리) 일자리 창출, 직·간접 채용, 전문인력 양성, 창업지원 - (안전)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, 안전 관리 등 - (온실가스 감축)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,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정책집행	◆ 타기관,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·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? - (타기관) 타기관(중앙정부, 지자체), 민간(단체) 등의 자원 활용 방안 - (자치구 영향)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, 파급효과 분석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	◆ 정책·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- (지속가능성) 지역경제 발전, 사회적 형평성, 환경보전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정책홍보	◆ 국내외 정책(사업)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- (홍보) 국내보도자료, 기자설명회, 현장설명회 - (정책영문화) 영문제목요약, 해외언론보도,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- (성평등) 성별고정관념·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보도자료 배포
기타사항	◆ 불필요한 외국어·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 을 사용하였습니까?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	◆ 공개 여부를 " 비공개 "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 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?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~제8호)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
2022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

'21년도 위원회 활동을 평가분석하여 비효율적 위원회를 정비하고, 운영 개선을 통해 위원회 운영 내실화 도모

I

추진개요

□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
 - (위원회 활동점검)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 작성, 정비계획 수립 의무
 - (위원회 통합·폐지) 위원회 설립목적 달성, 기능유사·중복, 실적 저조시 통폐합
 - (위원회 운영 공개·보고) 위원회 현황·운영 평가보고서 시 홈페이지 공개, 운영평가 및 정비계획을 매년 6월말까지 시의회에 보고

< 위원회 정의 및 설치요건 >

▶ 위원회 정의

: 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

▶ 설치요건

- ① 업무 특성상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- ② 업무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
□ 추진경과

- 원격회의 참석수당 기준 마련('21. 7.), 이해충돌방지 지침 강화('21.11.)
 - 대면회의와 동일 단가(기본료 15만원) 적용, 청렴서약서 작성 의무화 등
- 2021년 위원회 설치·운영 실태 전수조사('22. 1~ 2월)
- 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」에 청년위촉의무 비율 조항 신설('22. 3.)
 - 청년친화위원회 대상 청년위촉의무 비율 10% 이상 위촉 의무화

II

'21년도 위원회 운영평가

□ 위원회 현황

○ 연도별 현황

(단위 : 개)

연 도	'11	'12	'13	'14	'15	'16	'17	'18	'19	'20	'21
위원회 수	103	127	136	148	152	185	194	203	217	222	238
증 감	-	+24	+9	+12	+4	+33	+9	+9	+14	+5	+16

※ '21년 증감내역 : 신설 13개, 누락분 반영 8개, 정비 5개(폐지2, 비상설화3)

○ 설치 근거별 현황

(단위 : 개)

합 계	법 령		조 례	
	강 행	임 의	강 행	임 의
238(100%)	100 (42.0%)	16 (6.7%)	86 (36.1%)	36 (15.2%)
	116(48.7%)		122(51.3%)	

※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상설 위원회

○ 기능별 현황

(단위 : 개)

합 계	의 결	심 의	자 문
238(100%)	19 (8.0%)	167 (70.2%)	52 (21.8%)

※ 의결은 위원회 결정이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기속하나, 심의·자문은 법적기속력 없음

○ 정책분야별 위원회 현황

(단위 : 개)

합 계	행정·재무	보건복지·여성가족	경제	환경·안전	문화·관광	주택·도시계획	교통
238 (100%)	65 (27%)	38 (16%)	38 (16%)	34 (14%)	27 (11%)	27 (11%)	9 (4%)

□ 위원회 운영실태 분석

① 위원회 신설 - 면밀한 사전검토 없이 조례 제·개정시 관행적으로 신설

- 지난 10년간 위원회는 지속 증가추세로 '21년에는 13개가 신설되어 총 238개임
 - ('11) 103개 → ('15) 152개 → ('18) 203개 → ('21) 238개
('11년 대비 131% 증가, +135개)

- 위원회 필요성, 기능 유사·중복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조례 제·개정시 관행적으로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향이 있음

- 1인가구 지원, 적극행정 등 신규정책의 심의·자문 수요 증가로 신설되기도 하나,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여 심의·자문이 가능한 경우에도 위원회 신설

- 부서별·분야별로 단절된 위원회 기능(간막이 위원회)으로 위원회 신설

- 특히, '21년 의원발의 조례 제·개정으로 신설된 9개 위원회 중에 7개는 필요성 및 기능 중복 등에 대해 조직담당관 '사전협의' 없이 신설되었음

설치근거		개수	'21년 신설 위원회
법령		2	공공건축심의위원회, 적극행정위원회
조례	시장발의	2	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, 자율주행자동차운영위원회
	의원발의	9	1인가구정책자문위원회, 노들섬복합문화공간운영자문위원회, 마을버스정책심의위원회, 서울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, 서울미스산업육성위원회, 서울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, 수소산업육성위원회, 대안교육기관자문위원회,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

② 위원회 개최 실적 - 1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 증가, 비대면 회의 증가

○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위원회 개최 실적은 **전년 대비 감소**

- 위원회 총 개최 횟수가 소폭 감소('20년 2,247회 → '21년 2,209회)
- 위원회별 평균 개최 횟수도 10회 이하로 감소('20년 10.1회 → '21년 9.3회)

【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현황 】

(단위 : 개, 회)

연도별	위원회수	개최 횟수별 위원회수					위원회별 평균개최횟수	총 개최횟수
		미개최*	1회	2회	3회	4회이상		
2021	238개 (100%)	29개 (12%)	41개 (17%)	42개 (18%)	16개 (7%)	111개 (46%)	9.3회	2,209회
2020	222개 (100%)	21개 (9%)	44개 (20%)	31개 (14%)	27개 (12%)	99개 (45%)	10.1회	2,247회
2019	217개 (100%)	20개 (9%)	28개 (13%)	40개 (18%)	22개 (10%)	107개 (49%)	10.5회	2,279회

○ **1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는 29개(12%)**이며, 연간 단 1회 개최 위원회도 36개(15%)에 달함

- 29개 중 최근 4년 연속 미개최 3개, 3년 연속 미개최 5개, 2년 연속 미개최 5개, 1년 미개최 16개
- 기능·성격상 개최 빈도 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존치
 - ▶ 분쟁조정위원회(자치구간 분쟁발생시 개최), 주민투표청구심의회(주민투표 청구시 개최)

【 미개최 위원회 현황 : 29개 】

설치근거	미개최 기간	위 원 회 명
법 령 (10개)	4년이상	분쟁조정위원회,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, 주민투표청구심의회
	3년연속	공동구협의회,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
	2년연속	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, 주거정책심의위원회, 산지관리위원회
	1년	도로명주소위원회, 청소년육성위원회
조 례 (19개)	3년연속	DMC기획위원회, 유통분쟁조정위원회, 물가대책위원회
	2년연속	서울시립대운영위원회, 생활문화협치위원회
	1년	기반시설관리위원회,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,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, 사회주택위원회,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
		경제민주화위원회,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,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, 사회적경제위원회, 창업정책위원회, 청계천시민위원회, 희망경제위원회, 민주화운동기념정신계승위원회, 물순환시민위원회

○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**대면회의는 감소하고 비대면 회의 증가**

- 대면(출석)회의 비중이 전체의 70.8%('20년 1,590회) → 60.4%('21년, 1,334)로 감소
- 비대면(화상·서면)회의는 전체의 29.2%('20년 657회) → 39.6%('21년, 875회)로 증가, 특히, 화상회의가 대폭 증가하였음

(단위 : 회)

연도별	합 계	대면(출석)회의	비대면회의			비고
			(소계)	화상	서면	
2021	2,209 (100%)	1,334 (60.4%)	875 (39.6%)	223 (10.1%)	652 (29.5%)	
2020	2,247 (100%)	1,590 (70.8%)	657 (29.2%)	42 (1.8%)	615 (27.4%)	
2019	2,279 (100%)	1,848(82.2%)			431 (17.8%)	

③ **위원 구성 실태 - 위원 구성의 편향성 존재, 미활동 위원 다수**

- 전문가·학계 소속 비중이 전체 위촉 위원들의 61.4%로 높고, 공공기관·시민 단체·민간기업 등은 5~7% 수준임

【 위촉직 위원 수 : 4,566명(당연직 556명, 임명직 181명 제외) 】 (단위 : 명)

연도	계	전문가*	학계	공공기관	시민단체	시의원	민간기업	시민
2021	4,566 (100%)	1,586 (34.8%)	1,214 (26.6%)	327 (7.2%)	348 (7.6%)	280 (6.1%)	271 (5.9%)	540 (11.8%)
2017	4,046 (100%)	1,322 (32.7%)	1,099 (27%)	237 (5.9%)	480 (11.9%)	246 (6.1%)	203 (5%)	459 (11.4%)

* 전문가 : 변호사, 연구원, 언론인, 회계사, 세무사, 노무사 등

- 한 위원회에 **동일 분야**(전문가·학계, 시민단체 등) 또는 **특정 단체·기관 소속된 자가 다수 위촉되는 사례가 발생**하고 있어 **위원 구성의 편향성 존재**

- A위원회는 13명중 11명이, B위원회 98명중 33명이 동일 분야에서 위촉
- C시민위원회는 '△△△교육네트워크'에서 4명 위촉, '☆☆조합' 2명 위촉 등

○ 연간 **활동 실적이 없는** 위원수는 전체 위원중 **573명**(전체 위촉 위원 4,566명)이며, 특히, 위원수가 많은 일부 위원회의 경우 미활동 위원 수가 많음

- 연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(209개)의 위촉위원 중 573명은 회의 참여 실적이 없음
- 0000심의위원회('21년 278회 개최)는 위촉 위원 339명중 71명, △△△△△관리위원회('21년 8회 개최)는 249명중 172명, ☆☆☆☆☆위원회('21년 17회 개최)는 95명중 10명이 연간 위원회 참여 실적이 없음

○ **성별균형, 장애인·청년 위촉 비율 개선을 위해 지속적 노력 필요**

- 특정 성별 비율이 60%를 초과하는 위원회는 80개*(전체의 33.6%)로 위원 위촉 시 사전협의 절차 강화 필요 * 남성 60% 초과 55개, 여성 60% 초과 25개
- 장애인 위원은 37개(전체의 15.5%) 위원회에 73명이며, 청년 위원은 242명(전체의 5.3%)으로 전년 대비 다소 하락

【 현행 위원회별 성별·장애인·청년 위촉비율 기준 】

- 특정 성별 위원 60% 초과 위촉 금지(의무) ※ 성평등기본 조례 제15조
- 청년친화위원회의 청년 위촉비율 10% 이상(의무) ※ 위원회 조례 제8조 제5항
- 장애인 최소 1명 이상, 위원수 70명 이상 3% 이상(권고)

【 여성·장애인·청년 위원수 및 연령대별 위원수 】 (단위 : 명)

연도별	위촉위원	여성	장애인	청년	10대	20대	30대	40대	50대	60대
2021	4,566 (100%)	1,915 (41.9%)	73 (1.6%)	242 (5.5%)	80 (1.8%)	56 (1.2%)	186 (4.1%)	1,007 (22.1%)	2,083 (45.6%)	1,154 (25.3%)
2020	4,453 (100%)	1,862 (41.8%)	74 (1.7%)	284 (6.4%)	73 (1.6%)	47 (1.1%)	164 (3.7%)	1,099 (24.7%)	2,080 (46.7%)	990 (22.2%)

○ **지속적 관리로 중복위촉 및 장기연임 금지 규정은 대체로 준수되고 있음**

-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위원은 4명, 장기연임 위원은 5명 수준임
 - ▶ (3개 위원회 초과 위촉 현황) '14년 36명 → '16년 9명 → '18년 5명 → '21년 4명
 - ▶ (6년 초과 장기연임 현황) '14년 151명 → '16년 134명 → '18년 9명 → '21년 5명

4 위원회 운영 및 정보공개 실태 - 이해충돌방지 규정 준수 미흡, 회의록 공개율 저조

○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준수 미흡 사례 발생

- 단체·기관의 임원 등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단체의 사업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·의결에 관여하여 감사 지적된 사례 발생
- 위원회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 우려

【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관련 규정 】

- 행정기관소속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4호(준용)
 - 위원회 설치근거 법령에 위원의 결격사유,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 명시 의무
(단, 국민의 권리·의무 관련 안·허가, 분쟁조정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·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)

○ 위원회 회의록 공개율이 저조하고 위원회 정보 현행화 미흡

- 위원회 회의 총 개최횟수는 2,209회('21)이나, 공개된 회의록은 615건으로 공개율이 27.8%에 불과하며, 공개된 회의록에도 비공개 처리된 정보가 과다

【 위원회 회의록 공개 관련 규정 】
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-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5조(정보의 사전적 공개) 제1항 14호
 - 서울시 각종 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
-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(회의록 작성 및 공개)

※ '12년부터 「정보소통광장」에 위원회 개최계획·회의결과(회의록 포함)를 공개해 오고 있음

- 전체 위원회의 76%(238개중 182개)가 '19년 이후 위원 명단 현행화 하지 않음

5 위원회 수당 등 집행

○ 위원회 예산집행 현황 : 참석 심사수당 등으로 3,317백만원 집행

- 위원회별 평균 회당 151만원 집행, 위원회별 평균 9.3회를 개최

【 2021년 위원회 관련 예산 집행 현황 】

(단위 : 백만원)

계	참석수당	심사수당	교통비·식비·숙박비	사업경비	기타 운영비
3,317	1,740	795	179	472	131
(100%)	(52%)	(24%)	(5%)	(14%)	(4%)

※ 사업경비(토론회, 워크숍 경비 등), 기타 운영비(인쇄비, 속기사 비용, 다과비 등)

Ⅲ

위원회 정비계획

□ 정비방향

- 기능상 설치·운영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통·폐합 등 전면정비
- 단순한 위원회 줄이기가 아닌 위원회 체계화·활성화 차원의 정비

정비대상 위원회	정비방향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설치목적 달성 및 여건변화로 필요성 감소 □ 위원회 기능 상실 또는 설치근거 소멸의 경우 	⇒ 폐 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다른 위원회와 목적과 기능이 유사·중복되는 경우 □ 실·국·본부 내 다수의 자문 성격의 위원회 	⇒ 통·폐 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목적기능상 필요하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□ 비상설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- 안전 발생 시에 구성하고 회의 종료 시 해산 	⇒ 비상설 화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1년간 위원회 개최 현황 저조한 경우 - 1년간 미개최 및 연간 1회 위원회 개최 	⇒ 운영활성화

□ 정비대상 및 방법

① 1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 : 29개

- 중앙부처에 법령·조례개정 건의 등을 통한 정비 및 운영활성화

구 분	정 비 계 획				
	계	폐 지	통·폐합	비상설화	운영 활성화
총 계	29	6	2	13	8
조 례 개 정	14	3	2	9	
법 령 개 정 건 의	6	2	-	4	-
방 침 수 립 정 비	9	1	-	-	8

- 법령 개정 건의 : 조직담당관 → 행정안전부(위원회 총괄부처) / 주관부서 → 소관 중앙부처
- 조례 개정 및 방침수립을 통한 위원회 정비 : 위원회 소관부서 책임제로 추진

○ 위원회별 세부 정비방법 ※ 세부내역은「붙임 2」참고

구 분		위 원 회 명	
조례 개정 (14)	폐지 (3)	설치목적 달성 및 여건변화로 필요성감소	·경제민주화위원회 ·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, 희망경제위원회
	통·폐합 (2)	유사기능 수행하는 위원회로 통·폐합	·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+감정노동종사자권리 보호위원회 ·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(→ 건설기술심의위원회)
	비상설화 (9)	목적·기능상 필요하나 운영실적 저조	·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, 주소정보위원회 ·주거정책심의위원회 ·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, 주민투표청구심의회 ·유통분쟁조정위원회, 사회적경제위원회, ·사회주택위원회, 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위원회
법령 개정 건의 (6)	폐지 (2)	설치목적 달성 및 여건변화로 필요성감소	·분쟁조정위원회,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회
	비상설화 (4)	목적·기능상 필요하나 운영실적 저조	·공동구협의회,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, ·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, 산지관리위원회
방침 수립 (9)	폐지 (1)	설치목적 달성 및 여건변화로 필요성 감소	·생활문화협치위원회
	운영 활성화 (8)	설치 2년 이하 위원회 , 미개최 1년인 위원회 등	·DMC기획위원회, 물가대책위원회 ·기반시설관리위원회, 물순환시민위원회 ·청계천시민위원회, 서울교육복지시민관협의회 ·창업정책위원회, 청소년육성위원회

※ 경제민주화위원회 : 조례상 존속기한('21.12.31.) 만료되어 자동 폐지

② **연간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: 36개(연 1회 개최)**

○ **실·본부·국별** 위원회 기능 및 필요성 자체 검토 후, 정비 또는 활성화

(단위 : 개)

연번	실·국·본부명	설치 위원회	연회개최 위원회	연번	실·국·본부명	설치 위원회	연회개최 위원회
1	노동공정상생정책관	22	5	11	도시교통실	9	2
2	기획조정실	18	2	12	안전총괄실	7	1
3	문화본부	17	1	13	도시계획국	7	1
4	경제정책실	15	5	14	균형발전본부	5	1
5	행정국	14	3	15	푸른도시국	4	1
6	시민건강국	12	2	16	소방재난본부	4	2
7	여성가족정책실	11	1	17	관광체육국	4	1
8	평생교육국	11	1	18	스마트도시정책관	3	1
9	기후환경본부	10	1	19	남북협력추진단	2	1
10	시민협력국	10	4		합계	238	36

IV

위원회 운영 개선방안

□ 개선방향

- 위원회 **신설 사전협의·일몰제 적용 강화**를 통해 위원회 남설 방지
- 분야별 전문가 위촉으로 **대표성을 확보** 하되, 장애인·청년, 기업인 등 **다양한 계층의 시정참여 확대**로 위원회 운영의 **공정성을 강화**
- 위원 **이해충돌방지 적용 강화**로 청렴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**회의록 공개 확대**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
- 위원회 **운영점검·평가 절차**를 구체화하여 운영을 **효율화**하고, **실·본부·국별 자체평가 도입**으로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제고

□ 개선내용

① 위원회 **신설시 사전협의·일몰제 적용 강화** → 위원회 남설방지

- 기존 위원회 활용여부 등 부서 자체진단 후 조직담당관과 **사전협의** **강화**
 - 신설 필요성, 기존 위원회(분과위원회) 활용 가능 여부 등 부서 내부 자체진단(체크리스트) 실시 후 조직담당관에 위원회 신설을 요청하도록 절차 강화
- **의원 발의 조례**에 ‘위원회 신설사항’ 포함시, **조직담당관 사전협의 의무화** **강화**
 - 소관부서는 시의회에 조례 제·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제출시, 조직담당관과 위원회 신설 사전협의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 (지침 개정)
- 개별 조례 제·개정시, 위원회 **존속기한 명시 원칙 적용 강화**
 - 기존 위원회 운영실적, 행정여건 변화 등 고려하여 위원회 존속 여부 판단
 - ※ 존속기한 명시 예외 : “법령 강행” 또는 “특별한 사유” 있을 시

② **위원 위촉 사전협의 절차 개선, 위원구성 적정화** → **위원회의 대표성 · 공정성 강화 및 효율적 위원회 운영**

- 위원 위촉시 각종 인재DB 등 검증된 전문 인력을 활용
 - 국가인재 DB(인사혁신처), 여성인재 DB(여성가족부), 청년인재DB(미래청년기획단) 등을 활용하고, 필요시 일반시민 대상 공개모집 활용
- 위원 위촉(신설·교체)시, 조직담당관 등 관련부서 **사전협의 절차 개선**
 - 소관부서는 위원 신규 위촉 및 교체 전에 위촉 기준 충족 여부 사전협의 이행
 - 양성평등정책담당관(성별균형), 미래청년기획단(청년비율) 사전협의 완료 후, 조직담당관과 최종 협의

협의순서	부서명	협의사항
①	양성평등정책담당관	특정성별 60% 초과금지
	미래청년기획단	청년친화위원회 청년비율 10% 이상
②	조직담당관	장기연임·중복위촉 금지, 동일기관·단체소속 여부 등

-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**위원 구성 및 위원수 적정화 추진**
 - (대상) 위원수가 25명 이상인 50개* 위원회 (*별도 첨부)
 - (검토기준) 정책환경 변화로 필요성·기능 축소, 위원구성 편향성 여부, 회의 개최 횟수·안건수 대비 위원수가 많거나 미활동 위원이 많은 위원회
 - ▶ 위원구성 : 15명 이내 권고(서울시 위원회 지침)
 - (적정화 방안) ① 활동실적 미흡 위원 해촉, ② 위촉 분야 재구조화, ③ 위원수 축소 등

③ **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적용 및 위원회 정보공개 강화** → **청렴한 위원회 운영 및 시민 알권리 보장**

- 위원 **제척·기피·회피 절차 이행** 사항을 위원회 조례에 신설 강화
 - 지침상 규정인 위원회 심의·의결시 제척·기피·회피 이행 사항을 위원회 조례에 명문화

○ **청렴서약서 제출 의무를 조례에 명시해 위원 사적이의 추구 방지 강화** 신설

- 심의·의결이 필요한 위원회 개최시, **청렴서약서 제출의무를 조례에 명시하고 청렴서약서 내용에 “비밀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” 추가**

【 제척·기피·회피 주요사유 】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○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배우자 등이 안건 당사자인 경우 ○ 기타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
--

○ **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회의결과·회의록 사전공개 의무 강화** 강화

- 「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」 제5조(정보의 사전적 공개)에 따른 **“회의결과 및 회의록 공개 사항”을 시 위원회 조례에 명시**
- 법령 등의 근거 없이, 위원회 임의(필요한 경우)로 회의록을 공개·비공개토록 정한 개별 위원회 조례는 **정보공개법상 ‘공개 원칙’에 맞도록 정비 추진**

※ 00위원회 조례 : 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’

【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】

현 행	개정안
제9조의2(회의록 작성 및 공개) 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서울특별시의 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의 요구가 있거나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.	제9조의2(회의록 작성 및 공개) ⑤시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에 따라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(신설) ⑥ 제5항의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.(신설)

○ **위원회 정보(위원명단, 설치목적 등) 현행화, 위원회 개최계획 및 회의결과·회의록 공개 사항에 대해 실·본부·국별 공개율 모니터링 강화**

- (위원회 정보) 위원회 구성·위원 재위촉시, 방침서 및 위원명부 공문 제출
 - ▶ 제출처 : 조직담당관 ※ 정보소통광장에 등록
- (회의 정보) 5일 이내 개최 계획, 7일 이내 회의결과 및 회의록 공개
 - ▶ 주기적으로 회의결과 및 회의록 공개 안내·독려, 공개 내용 모니터링
- 실·본부·국별 「회의 결과 및 회의록」 공개율 공개(연 2회, 상·하반기)

신설

4 **위원회 운영점검·평가, 정비체계 개선** → 실·본부·국별 책임 운영 강화

- 위원회 운영점검(전수조사)·평가 절차와 소관부서 의무 강화 : 지침 개정
 - 위원회 점검·평가 항목, 정비절차 및 실·본부·국 역할 구체적 명시

- ① 연 1회 활동내역서(전수조사서) 작성·제출 (소관부서)
- ② 활동내역서 점검·평가 및 위원회 운영 개선·정비계획 수립·통보 (조직담당관)
- ③ 실·본부·국별 위원회 운영 개선·정비계획 수립 및 조치결과 제출 (실·본부·국)

- 법령·조례상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, 소관 부서장의 위원회 정비 노력 의무 신설

- 실·본부·국별 위원회 운영 평가·정비 실시 : 각 실·본부·국 주무과

- 부서 단위로는 위원회 기능의 유사·중복 검토, 유관 위원회 활용 가능성 판단이 제한적
이므로 실·본부·국 단위 전체 위원회 대상 운영 평가 및 정비 계획 수립·추진
- 조직담당관에서 수립한 위원회 전수조사에 따른 점검·평가 및 정비안을 반영
- 위원회 평가·정비 매뉴얼 및 관련 양식 제공으로 실·본부·국별 위원회 자체평가 지원

5 **위원회 조례 및 지침 전면개정** → 위원회 운영 체계 재정비

- 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·규칙 및 위원회 수당·여비지급 조례 전면 재정비

- 위원회 회의록 작성·공개,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의 의무,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신설 등 위원회 조례·규칙 전면 개정 추진
- 원격·서면회의 증가 등을 반영하여 위원회 수당 종류 및 지급 체계 정비('12년 이후 위원회 수당·여비지급 조례 미개정)

- 위원회 운영 지침 전면개정 및 개정판 제작·배포

- 원격회의 참석수당, 청년친화위원회 청년비율 10% 의무 등 위원회 조례·규칙 개정 사항 반영
- 위원회 신설 관련 체크리스트, 실·국·본부별 위원회 자체평가·정비 양식 제공

□ 추진 일정

- 위원회 정보 현행화, 회의록 공개 실시 : '22. 4월
- 실·본부·국별 위원회 자체평가·정비 계획 수립 : '22. 4월~
- 정비대상 위원회 관련, 조례개정 및 법령개선 건의 추진 : '22. 4월
- (조례개정)소관부서, (법령개정건의)조직담당관, 소관부서
- 위원회 운영·수당 관련, 조례·규칙 개정 추진 : '22. 4월~
- (조례) 개정안 확정 및 입법사절차(~4월), 조규심(7월), 의회 상정(8월)
- 서울시 위원회 지침 개정·배포 및 담당자 교육 실시 : '22. 4월~
- 위원회 운영평가·현황 공개 (시 홈페이지) : '22. 6월
- 위원회 운영평가 보고서 및 정비 계획 시의회 보고 : '22. 6월
- 실·본부·국별 위원회 자체평가·정비 결과 보고서 제출 : '22. 9월

□ 부서 협조사항

- 위원회 정보(위원 현황 등) 현행화 및 회의록공개 : 소관부서
- '22년 정비대상 위원회 정비 추진 : 소관부서
※ 법령(또는 조례 개정)시까지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·시행
- 성별균형·청년 위촉비율 준수 안내 및 사전협의 협조 : 양성평등정책담당관
미래청년기획단
- 여성·장애인·청년 DB 확대 구축 : 양성평등정책담당관
미래청년기획단
장애인복지정책과
- 실·본부·국별 위원회 자체평가 및 정비 추진 : 실·본부·국 주무과

의안번호
76

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소관 상임위
		이종환 의원	2022.8.26.
주요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박물관이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 수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조례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 		
추진경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22. 8.29. 일부개정조례안 발의(박환희 의원 외 33명) 		
부 서 검토의견	원안가결(○) / 수정가결 () / 부결() / 보류()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동의함. - 市 조직담당관 위원회 신설 검토의견 : 적정 		
대응방안	○		
상 임 위 처리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(원안가결, 수정가결, 부결, 보류, 미상정으로 구분) - 수정가결시 수정내용, 부결·보류·미상정시 사유 기재 		
향후계획	○ '22.10. :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조례 시행		
담당부서	박물관과	팀장	김득삼(☎2133-4183)
		담당	조서영(☎2133-4185)